

## 카나다 광림교회 장학금 지급규정 (2023.07.11 수정)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“카나다광림교회”(이하“본 교회”라 한다)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급기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교회 장학생의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에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(단, 외부지급 장학금의 경우는 별도로 한다).

제3조(지급대상 및 선발기준) 본 교회등록교인으로서 포스트 고교교육의 과정으로 디플로마 이상의 과정에 풀타임 재학생으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(단, 외부지급 대상 규정은 별도로 한다).

1. 본 교회등록 후 1년 이상 된 세례교인.
2. 본 교회 대학교 입학예정자부터 대학원생까지.
3. 본 교회에서 1년 이상 성실히 봉사한 자.
4.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(목사, 전도사)가 추천하는 자.
5.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.
6. 고학년과 처음 수혜자를 우선시 한다.
7. 신학생 및 교역자 자녀는 별도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.(신설)

### 제4조(유효기간)

장학금 신청 및 수혜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제5조(신청기간 및 방법, 제출서류)

1. 장학금 수혜 희망자는 교회에서 별도로 공시하는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 (교회양식) 1부와 소정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교회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.
2. 제출서류는 교회신청양식 1부, 자기소개서 1부(사진, 신앙적 배경과 신앙고백, 장래희망 및 계획 등을 담은 2p분량), 재학증명서 1부, 재정관계 설명서 (학비조달방법), 교회 봉사부서 목회자 또는 부장 추천서 1통  
그 외 서류는 장학생선발 심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6조(신청자격의 제한)

1. 전년도(학기)에 본 교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은 자는 연속수혜가 불가하다.
2. 징계(유기정학 이상)를 받은 자.
3. 교회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.
4. 장학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.
5. 기타 교회윤리 및 기독교 윤리에 위배되는 자.
6. 해당 학기에 교회 내 기타 장학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자.(신설)

#### 제7조(장학금 수혜자 선발 방법 및 지급액)

1. 장학금 수혜자 확정에 대한 결재는 장학위원회와 교육담당 부목사가 하며, 새학기 시작 전 주보에 명단을 기재하고, 별도의 형식을 통해 장학위원회에서 일괄 지급한다.
2. 본 교회 장학금 지급인원과 기준 액은 매년(매학기)마다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제8조(위원회의 구성과 임기)

1. 장학위원회는 교육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행정목사, 교육목사, (EM 사역자,) 사회봉사부장, 재무부장, 속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.
2.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.

#### 제9조(기능 및 선발심사)

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금 예산 및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
2.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심사, 지급액 및 지급인원에 관한 사항.
3. 기타 장학금에 관계되는 사항의 심의 및 검토.

#### 제10조(회의)

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학기(매년) 시작 2개월 전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부칙 (2023. 07. 11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.